

부 산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12드단○○○○○○(본소) 이혼
2012드단○○○○○○(반소) 이혼

원고(반소피고) ○○○○
주소 울산 ○구 ○○동 ○○○-○ ○○빌라 ○동 ○○○호
등록기준지 ○○시 ○○면 ○○리 ○○○

피고(반소원고) ○○○○
주소 부산 ○○구 ○○동 ○○○-○
등록기준지 부산 ○○구 ○○○로○번길 ○

변 론 종 결 2012. 12. 21.

판 결 선 고 2013. 1. 25.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위자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위자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 본소 : 주문 제1항 및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위자료 3,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 반소 : 주문 제1항 및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3,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반소장송달 다음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는 원고의 휴대전화로 걸려온 전화나 문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누군지 추궁하며 전화를 건 상대방에게 전화하여 협박하고 2012. 3. 중순경에는 마약을 투여한 상태로 가재도구 등을 부수고 원고를 폭행하는 등 의처증이 심하였고, 2011. 12. 말경부터는 일을 하지 않고 원고로부터 생활비를 받아쓰면서 2012. 3.에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빌려달라고 강요하는 등 원고의 기동서방 노릇을 하려고 하여, 원고는 피고 몰래 이사를 갔는데 피고는 원고의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원고의 언니 집에 가서 기물을 부수고 폭행하였는 바, 그렇다면 이 사건 혼인은 피고의 잘못으로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혼인생활을 시작하며 남자관계를 깨끗이 하겠다고 약속

하고 노래방도우미 생활을 계속하였음에도 남자 손님들과 따로 만나며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혼인은 원고의 잘못으로 파탄에 이르렀다 할 것 이어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7. 8. 전 배우자와 사이에 난 자녀들을 ○○○○○에 두고 혼자 귀국하여 ○○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생활하던 중인 2011. 7. 20.경 손님으로 온 피고를 만나게 되었다.

(2) 원고와 피고는 2011. 10.경 원고가 살던 집에서 동거를 시작하여 2011. 11. 21. 혼인신고를 하였다.

(3) 원고는 피고의 동의하에 노래방 도우미생활을 계속하였고, 피고는 건설현장에서 ○○○○○으로 근무하다가 2011. 12. 말경 위 공사가 끝나자 다른 일을 시작하지 않았다.

(4) 한편 원고의 자녀들이 2011. 12.경 ○○○○○에서 방학을 맞아 귀국하자 피고는 원고의 자녀들을 데리고 부산, 경주, 청도 등으로 여행을 다니는 등 원고의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었다.

(5) 원고는 자녀들이 출국한 2012. 2.경부터 피고가 일은 하지 않고 원고의 돈만 축낸다는 불만을 갖기 시작하였는데, 실제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차량할부대금 2,000만 원을 지급받고, 채권 1,900만원을 양도받아 이 중 1,000만원을 사용하였으며, 2011. 11. 13.에는 부족한 자재구입비 300만원을 빌렸다가 2012. 1. 5. 이자와 합쳐 344만원

을 변제하기도 하고,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로 원고의 통장과 신용카드를 사용하고는 원고에게 2012. 1. 10. 391만원을 변제하기도 하였다.

(6) 피고는 원고와 2012. 3.경 피고의 경제력, 원고의 남자관계 등을 이유로 심하게 다투다가 헤어져 있기로 하고 ○○의 어머니 집으로 내려갔는데, 그 사이 원고가 몰래 이사 간 사실을 알게 된 피고는 원고의 연락처를 알려달라며 원고의 언니 집으로 찾아가 재물을 손괴하고 폭행하였다.

(7) 한편 원고는 2011. 3.경 노래방 손님인 ○○○과 하루당 50만원을 받고 따로 만나 시간을 보냈는데, 그 시간 원고와 ○○○이 성관계를 맺었다는 증거는 없다.

(8) 현재 원고와 피고는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각 이혼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원고와 피고와 모두 이혼을 원하는 점, 서로 별거한지 2년이 가까워 가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혼인은 파탄(민법 제840조 제6호)에 이르렀다 할 것이어서, 원고와 피고의 이혼청구는 각 이유 있어,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각 위자료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혼인은 원고의 ○○○ 혹은 다른 남자 손님들과의 부정한 관계, 이에 대한 피고의 의심 및 폭력, 피고의 원고에 대한 경제적 의존, 이로 인한 원고와 피고 간의 다툼으로 파탄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고, 그에 대한 책임은 원고와 피고 모두 동등한 보이는데다가,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이 처음부터 원고의 노래방 도우미 생활을 용인하면서 시작되었던 점 및 피고는 원고를 처음 만날 때부터

신용불량자로 일정한 직장 없이 개개의 공사현장에 고용되어 일정기간 일하는 직업을 가졌던 점을 감안해 보면, 원고와 피고의 이러한 다툼의 원인은 처음부터 어느 정도 예상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의 각 상대방이 혼인파탄에 더 큰 책임이 있다는 전제에 선 각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의 각 이혼청구는 인용하고, 각 위자료청구는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나리